

2015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실시 공고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0항, 시행규칙 제106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67호에 따른 「2015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」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평가대상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
(기관별 별도 통보)
2. 평가자 :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
3. 평가대상업무 :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업무(2013.6.10.~2015.6.9.)
 - ※ 1회차 기관 평가 대상기간 종료일(2013.6.9)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
 - ※ 2년 미만의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 지정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
4. 평가방법 : 기관별 방문평가
5. 평가표 : 붙임 참조
6. 평가일정
 - 평가실시 : 2015.6.1.(월) ~ 9.30.(수) 중 1~2일
 - ※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,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평가일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
 - 평가결과(절대점수) 통보 : 2015.10.14.(수)
 -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: 2015.10.27.(화) ~ 11.12.(목)
 - ※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
 - 최종 평가결과 공표 : 2015. 12월 중
7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(052-7030-640, 641)에게 문의

2015년 5월 1일

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 단